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740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7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180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3. 29.

판결 선고 2017. 4.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180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B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6면 제6행 내지 제13행 '피고 A과 B은 부부로 ..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를 '또한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기한 1년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2010. 6. 11.인데 A은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만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1년씩 연장되어 왔던 사실, 제1심공동피고 A, B은 부부인데, 위 부부는 제1심공동피고 B 명의로만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없었던 사실, 제1심공동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A은 D 뿐만 아니라 제1심공동피고 B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 대하여 D은 약 5,700만 원, E는 약 2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5개월 내지 7개월여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공동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로, 제8면 제2행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A, B이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 A', '피고 B'을 '제1심공동피고 A', '제1심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장준아

판사김연경

별지